##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만의원 발의)

의 안 번호 3296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김용만 의원

찬 성 자:169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 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심지어 이러한 인 사들이 역사 및 교육 관련 공직이나 공공기관 등에 임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독립기념관장에임명되는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음.

이는 국가의 근본인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유린한 사실상의 매국행위라 할 것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

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 당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임용하거 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 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무원 등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립운동·항일운동을 폄훼·비방하고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실체를 부정·왜곡하는 행위를 근절케 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사회정의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역사 왜곡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조).
- 다.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 라. 대상기관들이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제2조의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마.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의 임명이나 위촉에 관하

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토록 함(안 제10조).

#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 등이 대한민국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립운동·항일운동을 폄훼·비방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실체를 부정·왜곡하는 행위(이하 "역사 왜곡행위"라 한다)를 근절케 함으로써 헌법 수호와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사 왜곡행위) 역사 왜곡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일본제국주의의 지배 또는 「일제강점하 반 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 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2. 러·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과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3.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 4.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부정하거 나 날조(오기·누락을 포함한다)하여 유포하는 행위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 왜곡행위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제2조의 역사 왜곡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한정한다),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이하 "정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설치)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방 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역사 왜곡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 2. 역사 왜곡행위 관련 진정 조사 및 이와 관련된 권고
  - 3. 역사 왜곡행위를 정당화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 4. 그 밖에 역사 왜곡행위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1. 역사고증 · 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되거나 지명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 왜곡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⑤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임명 금지) ① 국가등이 정무직공무원등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른다.

- ② 국가등이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무직공무원등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무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 항제1호나목에 한정한다),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의 임명이나 위 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 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 금지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임명 금지 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임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